

16가지 사례로 배우는

단기수출보험 보상 가이드

2022. 4.

국외보상채권부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기업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보험금을 통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주요사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수출보험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향후 약관 및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② 본 안내문은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 및 법률적 책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공사 앞 구체적 문의 없이, 이 안내문 상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 례

I 공 통

1. 실제수입자와 보험증권상 수입자가 다른 경우 9
2. 가짜 수입자에게 사기를 당해 거래한 경우 (제3자 명의도용 사기) 10
3. 본지사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2
4.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3
5. 물품의 멸실, 훼손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4
6. 수출대금 상계에 동의한 경우 15
7. 수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6
8. 약관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17
9.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한 경우 18
10.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9

II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

1. 수출통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23
2. 미결제 상태에서 계속하여 수출한 경우 (연속수출) 24
3. 특정건만 변제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변제충당) 25

III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Plus⁺)

1. 단체보험 증권 특기사항을 위반한 경우 29
2. 연체중인 수입업체 앞 수출한 경우 (유사연속수출) 30
3.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31

I. 공통

- 1 실제수입자와 보험증권상 수입자가 다른 경우
- 2 가짜 수입자에게 사기를 당해 거래한 경우
(제3자 명의도용 사기)
- 3 본지사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4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5 물품의 멸실, 훼손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6 수출대금 상계에 동의한 경우
- 7 수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8 약관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 9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한 경우
- 10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공통

실제수입자와 보험증권상 수입자가 다른 경우

- 보상은 수출업체와 무역보험공사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 지므로 **보험관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증권상의 수입자와 실제 수출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사 례

- ❶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A사에 대하여 보험한도를 받고 수출통지하였으나, Invoice 및 수출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거래는 A사가 아닌 A사의 자회사 B사와 거래하였음
⇒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함**
- ❷ 수입업체 C사가 P/O를 발행하고 결제를 하다가 C사의 계열사인 D사가 P/O를 발행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으나, 수출업체는 기존대로 C사 앞 수출통지
⇒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실제 수입자와 보험증권의 수입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히 상호가 비슷한 계열사와의 거래, 기존 거래 수입자와의 거래구조 변경시 보험증권의 수입자와 동일한 업체인지 유의 하세요!!

2 공통 가짜 수입자에게 사기를 당해 거래한 경우

- 명의도용 사기건의 경우 증권상의 수입자가 아닌 제3자(사기범) 앞으로 수출이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의 비상위험(수입국 위험 등) 및 신용위험(파산, 지급지체 등)만을 담보할뿐 **사기를 당할 위험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사 례

- ❶ 사기범은 수입업체 A사로 가장하여 수출업체에게 이메일로 접근, 수출 물품을 주문한 후 물품을 편취하고 잠적
 - 물품 도착항을 A사 소재국이 아닌 제3국으로 지정하고, 수하인도 제3자로 지정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하였으나,
 - 수출업체는 A사에 대해 수출보험을 가입하고 수출진행 하였으며, 사고 후 조사를 통해 사기거래였음을 알게 됨

⇒ **보험관계 불성립, 수출자 과실을 사유로 보상받지 못함**
- ❷ 사기범은 유럽 수입업체 B사를 사칭하여 우리 수출업체에게 거래제안, 수출업체는 B사에 대하여 공사 수입자 신용조사 진행 및 수출보험 한도를 받고 보험 가입 후 수출
 - 사기범은 아프리카지사로 물품을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수출업체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로 선적하였으나 이후 연락 두절
 - 사고조사 결과 실제 B사는 수출업체와의 거래사실 뿐 아니라 해외 지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보험관계 불성립, 수출자 과실을 사유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명의도용 사기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니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 ① **(수입항)** 지사사무소가 있다며, 제3국으로의 물품 선적 요구
 - ② **(수출물품)** 실제 수입업체의 업종과 거래 물품이 불일치
 - ③ **(이메일 계정)** 회사계정이 아닌 G메일 또는 회사명과 다른 계정 이용
 - ④ **(연락방식)**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지 않고 이메일(G메일 등), 메신저앱으로만 연락
 - ⑤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의 부재 또는 최근 급히 만들어졌거나, 공식 사명(社名)과 URL이 미묘하게 다른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안내함
- 공사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결과 정상업체일지라도 거래시에는 홈페이지,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신용조사 보고서와 동일업체가 맞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 ※ 공사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실제 수출계약 상대방과 동일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보상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제3자 명의도용 사기란?

- 제3자(사기범)가 다른 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우리기업에게 접근,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고 수출된 물품을 빼돌린 후 잠적하는 수법
 - 주로 유럽 등 선진국 업체의 아프리카 지사인 것으로 가장하여 물품을 아프리카(우간다 등)로 보내라고 지시
 - 최근에는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 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사기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3 공통 본지사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A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사고조사 결과 A사는 수출업체 대표의 개인투자 법인으로 밝혀짐
⇒ **본지사간 거래로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수출업체 또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업체와의 거래는 본지사간 거래로 간주 되어 보상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참고사항

본지사 기준

1.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 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4 공통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약관에 규정된 적용대상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입업체 A사는 국내 B사에게 발주하고 계약하였으나, B사는 P/O를 C사에게 임의로 전달하여 C사가 수출물품 생산 및 선적까지 이행. 이후 C사는 B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고통지 및 보험금 청구
⇒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거래구조가 약관상 적용대상 거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또한, 계약상 대금지급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조항이 없어야 수출보험을 통하여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적용대상거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제 2 조(적용대상거래) ①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② 제1항의 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5 공통 **물품의 멸실, 훼손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물품의 멸실, 훼손 등 화물자체로 인한 손실은**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므로 **수출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운송도중에 수출물품이 모두 훼손되자 수입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하며 수출물품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부
⇒ 수입업체의 클레임은 정당하며, **물품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수출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수출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출보험이 아닌 적하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으세요!!

6 공통 수출대금 상계에 동의한 경우

- 수출대금 일부 상계에 동의한 경우 **상계에 따른 수출채권 금액 감소분을 차감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반품요청 및 수출대금 중 일부 금액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후 보험금 청구
⇒ 상계한 부분만큼 수출업체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상계에 따른 금액은 보험금 산정시 차감**

고객 주의사항!!

- 수입업체와 수출채권금액 상계에 동의한 경우, 상계금액은 손실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공통 수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보험사고가 **수출업체(대리인, 피사용인 등 포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①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의 거래에서 약속된 선적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선적, 수입업체는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대금 미지급
⇒ **수출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보상받지 못함**
- ② 매입(추심)은행의 업무과실로 수입업체 앞 물품인도가 지연, 수입업체는 이를 사유로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대금 미지급
⇒ **수출업체 대리인(은행)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수출계약내용 (선적기한, 선적물량 등) 을 철저히 이행해주세요!!

8

공통

약관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손실방지경감의무, 지시에 따른 의무, 조사에 따른 의무, 사고발생 통지의무 등 **수출업체가 약관상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① 수출업체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거래내용 증빙 등 공사의 사고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않음
⇒ **조사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함**
- ② 수출업체 A사는 수입업체 B사와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공사에 사고발생 통지기한을 2개월 경과 후 통지. 그 사이 타수출업체 C사와 수입업체 B사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추가 보험사고 발생
⇒ **지급보험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차감**

고객 주의사항!!

- 사고조사 및 손실방지를 위하여 공사에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사고통지 기한을 준수해 주세요!!

9 공통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한 경우

-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사고조사보고서와 수출서류(Order sheet 및 Packing list) 등을 검토한 결과 수출물품이 음란물 DVD로 판명
⇒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위법한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공통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관계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 결제를 1년 이상 받지 못한 수출기업이 수입업체 앞 미결제금액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보험가입한 다음, 사고 발생
⇒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미결제여부 등)을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면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보험기간 중 공사가 요구한 사항,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미결제(부실채권) 여부, 이면계약 여부, 소송분쟁 여부 등

II.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

- 1 수출통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 2 미결제 상태에서 계속하여 수출한 경우
(연속수출)
- 3 특정건만 번제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번제충당)

1

단기일반

수출통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 수출통지가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①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A사 앞 인수(보상)한도를 신청하여 부여 받았으나, 선적후 수출통지는 하지 않음
⇒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함
- ② 실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출로 수출 통지한 경우
⇒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인수(보상)한도 부여만으로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하여 수출통지를 실시해주세요!!
- 수출통지는 항상 실제 수출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2 단기일반 미결제 상태에서 계속 수출한 경우 (연속수출)

- 이전 수출건이 **만기일로 부터 30일 이상 연체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속수출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가 기존 선적건에 대하여 만기일인 '21.12.31로부터 30일 이상 결제를 지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3.1과 '21.5.1에 동일수입업체 앞으로 추가 선적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만기일 +30일	결제금액	결제일	미수금액	보상여부
1	100	'20.10.1	'20.10.31	'20.11.30	100	'20.10.31	0	
2	100	'20.12.1	'20.12.31	'21.1.30	30	'21.5.1	70	0
3	100	'21.3.1	'21.3.31	'21.4.30	-	-	100	X (2번으로
4	100	'21.5.1	'21.5.31	'21.6.30	-	-	100	인해 3,4번 보상불가)

⇒ 3번과 4번은 **약관상 연속수출에 해당되어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수출대금 결제를 30일 이상 지연하고 있는 수입업체 앞으로는 기존 연체건 결제전까지 추가 선적을 유보해 주세요!!

3 단기일반 특정건만 변제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변제충당)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 협의하여 특정건을 지정하여 변제한 것과는 상관없이 **공사는 결제기일 도래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최초 3건(300만불)은 보험을 들고 이후 2건(200만불)은 보험을 들지 않았음. 이후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2건(200만불)만 지정하여 결제하고 최초 3건(300만불)은 보험사고 처리 하고자 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자 송금액은 만기 순서대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

구분	수출금액 (백만불)	선적일	만기일	보험가입 여부	수출입자간 지정결제	변제충당적용 후 보상심사
1	100	'22.1.1.	'22.5.1	O	미결제	결제
2	100	22.2.1	'22.6.1	O	미결제	결제
3	100	22.3.1	'22.7.1	O	미결제	미결제→ 보상O
4	100	22.4.1	'22.8.1	X	결제	미결제
5	100	22.5.1	'22.9.1	X	결제	미결제

⇒ 변제충당 적용하여 3번 수출건만 보상대상

고객 주의사항!!

- 공사는 결제일자에 따라 순서대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정건만을 지정하여 변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Plus⁺)

- 1 단체보험 증권 특기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연체중인 수입업체 앞 수출한 경우
(유사연속수출)
- 3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1

Plus⁺

단체보험 증권의 특기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단체보험(수출안전망 포함) 이용 수출업체가 증권 **특기사항(고위험 인수 제한국가 및 R급 수입자 앞 수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① 수출업체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인 이란의 수입업체 앞으로 수출거래 진행
⇒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함
- ②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A사가 공사신용등급 R급 업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A사 앞 수출거래 진행
⇒ 특기사항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수출진행시 보험증권의 특기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참고사항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증권의 특기사항

- “상기 보험계약기간 개시일자 기준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소재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 대해서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수출계약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해서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Plus+ 연체중인 수입업체 앞 수출한 경우 (유사 연속수출)

-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수출건에 대하여 **30일 이상 연체중인 수입업체에게 수출하여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가 30일 이상 연체중인 상태에서 Plus+보험을 가입 한 후 동일 수입업체 앞으로 계속하여 수출 진행하다 사고 발생

구분	수출금액	결제금액	손실액	선적일	만기일	만기일+30일	보상여부
기존 보험계약 ('20.1.1~'20.12.31)							
1	100	100	-	'20.10.1	'20.10.31	'20.11.3	
2	100	30	70	'20.12.1	'20.12.31	'21.1.30	0
갱신 보험계약 ('21.1.1~'21.12.31)							
3	100	0	100	'21.3.1	'21.3.31	'21.4.30	X(2번으로 인해 3,4번 보상불가)
4	100	0	100	'21.5.1	'21.5.31	'21.6.30	

⇒ 3번과 4번은 유사 연속수출에 해당되어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보험계약기간 이전 만기가 도래한건 중 30일 이상 연체중인 수입업체 앞으로는 결제 완료시까지 추가 선적을 유보해 주세요!!

3

Plus*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 증권상 보험계약기간 동안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보험계약 기간 내에 선적하지 않은 수출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례

- 수출업체는 Plus+보험(보험계약기간 : '20.4.1~'21.3.31)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기간 경과 이후 즉시 연장하지 않고 한달 후 재가입 (보험계약기간 : '21.5.1~'22.4.30). 재가입전인 '21.4.15자 선적건에 대하여 사고발생
⇒ 보험계약기간내 수출건이 아니므로 보상받지 못함

고객 주의사항!!

-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내 선적되었는지 꼭 확인주세요!!

